

# 규정/REGULATION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관련 항목: ACH, ACH-RA, ACI, ACI-RA, COF-RA, EEB-RA, GAA, GDB-RB, IGN, JHC, JHC-RA  
책임 부서: Division of Human Resources and Talent Management

##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Employee Assistance Program

### I. 목적

Montgomery 카운티 교육위원회 정책 GAA 인력 우수성(*Workforce Excellence*)에 의거하여, 현직 및 퇴직 몽고메리 카운티 공립학교(MCPS) 직원과 그 직계 성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비밀 유지 및 자발적 참여 기반의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EAP)을 시행합니다.

### II. 배경

MCPS EAP는 직원의 복지와 업무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는 개인적·조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비밀 유지 및 자발적 참여 기반의 직장 프로그램입니다.

교육위원회 정책 GAA 인력 우수성(*Workforce Excellence*)에 따라, EAP는 직원의 복지를 증진하고 조직의 회복탄력성을 높이며, 인력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업무 환경 개선 전략을 제공합니다. 또한 직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필요에 따라 신속하고 효과적인 갈등 중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AP는 직장 내 고민, 신체 질환, 정신적 및/또는 사회-정서적 문제, 알코올 또는 기타 약물 사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평가, 상담 및 전문 기관 연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III. 절차

## A. 비밀 유지

1. EAP 는 연방법 및 주법, MCPS 규정, 전문 윤리 기준에 따라 내담자의 비밀을 유지합니다. EAP 직원은 아래 명시된 비밀 유지의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는 내담자의 서면 동의 없이는 내담자 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EAP 는 내담자에게 비밀 유지가 제한되는 다음 조건에 대해 안내해야 합니다.
  - a) 법적 의무 신고자로서, EAP 직원은 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아동 학대나 방임, 또는 취약한 성인에 대한 방임, 학대, 착취가 의심되는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 b) EAP 직원은 MCPS 직원이나 계약업체 직원이 자신 또는 타인에게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내담자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2. 직원의 EAP 참여 기록은 관련 법률 및 전문 윤리에 따라 인사 기록과는 별도로 의료 기록으로서 엄격하게 비밀로 유지 관리됩니다. 오직 EAP 직원만이 해당 파일과 포함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 a) 서면 동의 없이 MCPS 에 제공되는 유일한 정보는 프로그램 평가 목적으로 수집된 익명의 통계 데이터이며, 여기에는 개인 또는 식별 정보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정 데이터 범주로 인해 개인 식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EAP 는 수립된 절차에 따라 해당 범주를 보고하지 않습니다.
  - b) EAP 는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는 내담자에게 비밀 유지의 한계가 명시된 이해 확인각서(Statement of Understanding)를 읽고 서명하도록 요청합니다. 위기 상황이나 진정(de-escalation) 상황에서 처음 EAP 에 접촉한 내담자에게는 EAP 직원이 비밀 유지의 한계를 구두로 안내합니다.
  - c) EAP 내담자는 EAP 직원이 자신의 프로그램 참여와 관련하여 제삼자와 대화하거나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보 공개 동의서(Release of Information)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내담자의 MCPS 수퍼바이저, Division of Human

Resources and Talent Management-DHRTM)/Department of Compliance and Investigation-DCI, 소속 노동조합 또는 외부 의료 기관 등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d) 내담자의 서면 요청이 있을 경우, EAP 직원은 해당 내담자의 기록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EAP는 정보 공개가 부적절하거나 내담자에게 해로울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조언할 수 있으며,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공개되는 정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EAP 직원은 내담자의 기록 요청에 대해 업무일 기준 최대 10 일 이내에 회신해야 합니다.

## B. EAP 직접 서비스

### 1. 평가 및 단기 상담 서비스

- a) 내담자는 EAP 직원으로부터 직접 연간 최대 8회의 단기 상담 세션을 받을 수 있습니다. EAP 직원은 내담자의 복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평가하고, 적절한 치료 또는 지원 계획을 수립합니다.
- b) 상담건이 EAP의 실무 범위를 벗어나거나 타 기관의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치료 계획에는 관련 있는 적절한 MCPS 내부 자원 또는 지역사회 자원으로의 연계(리퍼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c) EAP 직원은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내담자 및 연계 기관을 대상으로 사후 관리(Follow-up)를 실시합니다.

### 2. 위기 대응 및 개입

- a) MCPS 위기 대응팀은 교육구 시스템 내에서 중대 사건(예: 학생 또는 직원의 사망 등)이 발생할 경우, 수립된 프로토콜에 따라 EAP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 b) 위기 상황이 직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 EAP 직원은 해당 위기가 직원들에게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고 가장 적절한 직원 지원 방안을 권고하며, 직원 지원 제공을 위해 위기 대응팀에서 리더십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c) EAP는 직장 내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과 EAP 이용 방법을 포함하여, MCPS 리더십/관리직을 대상으로 자문 및 교육을 제공합니다.

### 3. MCPS 리더십 대상 교육, 자문 및 코칭

- a) EAP 직원의 역할–
  - 1) 관리자의 리더십 기술 배양, 관리자 본인의 복지 증진, 직원의 업무 성과 지원, 그리고 연계 프로토콜을 포함한 모든 직원의 EAP 서비스 인지도 향상을 위해 전문적인 학습, 코칭 및 자문을 제공합니다.
  - 2)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 가이드를 구하는 조직 내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고 의견을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직원의 복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직적 문제나 시스템 전반의 변화가 포함되며, 조직의 회복탄력성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b) 관리자의 감독 책임과 관련된 자문 및 코칭 세션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4. 교육 및 홍보 서비스

- a) 신규 임용자 교육(New Employee Orientation) 기간 동안 모든 신규 채용 직원은 EAP 프로그램에 대한 개요와 직원의 복지를 함양하고 조직의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 학습 기회에 대해 안내받습니다.

- b) EAP 직원은 모든 직원을 위한 홍보 자료를 개발하고, EAP 이용을 장려하며 직원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대외 협력 활동에 참여합니다.

#### 5. 갈등 해결 프로그램

EAP 직원은 강력하고 효과적인 인력 양성과 상호 존중의 문화를 지원하려는 MCPS 의 약속의 일환으로,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비용 부담이 없는 자발적이고 비밀이 보장되는 중재 서비스를 제공하는 갈등 해결 프로그램(Dispute Resolution Program)을 운영합니다.

#### C. 연계(리퍼럴)

##### 1. 일반 사항

- a) EAP 참여는 자발적 참여입니다. 고민이 있는 직원은 누구나 자발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것을 권장합니다. EAP 는 본인 스스로의 신청(Self-referral)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동료 또는 노조 대표를 통한 연계도 장려합니다.
- b) EAP 연계, 참여 또는 불참으로 인해 직원의 고용, 승진 또는 기타 혜택에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2. 수퍼바이저

EAP 직원은 MCPS EAP 웹사이트에 게시된 관리자(수퍼바이저)를 위한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활용 가이드북(*Supervisor's Guide to Using the Employee Assistance Program Handbook*)을 매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관리자는 가이드북을 검토하고 공식 및 비공식 연계 절차 지침을 따를 것을 권장합니다.

#### D. 프로그램 비용

- 1. EAP 가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내담자에게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2. 전문 기관에서 권고한 치료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내담자 본인 부담입니다. EAP 직원은 가능한 한 직원의 건강보험으로 보장되는 서비스를 연계/리퍼합니다.
3. 프로그램 서비스는 모든 MCPS 직원, 함께 거주하는 직계 성인 가족 및 MCPS 퇴직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E. 휴가(Leave) 사용**

1. 관리자가 직원의 EAP 이용을 권장하는 경우, 관리자는 근무 시간 중 유연근무를 제공하거나 연차 또는 병가 사용을 승인할 것을 권장 합니다.
2. 직원이 독자적으로 EAP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 근무 시간 외(일일 무급 점심시간 포함)를 이용하거나 근무 시간 중 휴가 사용에 대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직원은 휴가 승인 요청 시 관리자에게 EAP 지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공개할 의무가 없습니다.
  - a) MCPS EAP 가 직접 제공하는 대부분의 서비스는 MCPS 병가 또는 가족 간병 휴가(illness in family leave) 요건을 충족합니다.
  - b) EAP 는 개별 상황에 맞는 휴가 관련 안내를 제공하며, 직원은 소속 직원 협회(노동조합)를 통해 더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F. MCPS 알코올 및 기타 약물 검사 프로그램**

1. 상업용 운전면허(Commercial Driver's License-CDL) 소지자
  - a) 자발적 연계(Self-referral)
    - 1) 약물이나 알코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CDL 소지자는 EAP 에 자발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것을 장려합니다.
    - 2) EAP 직원은 해당 직원과 면담하여 문제의 심각성과 치료 필요성을 평가합니다.

- 3) 전문적인 평가 결과, 직원의 알코올이나 약물 남용 또는 오용이 타인을 위험에 빠뜨린다는 정보를 입수한 경우 EAP는 즉시 준법 및 조사과(DCI)에 알려야 합니다.
  - 4) CDL 소지자에게 알코올 또는 약물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EAP는 해당 직원을 적절한 치료 기관으로 연계하고 DHRTM과 협력하여 해당 직원을 안전 민감업무(safety-sensitive position)에서 제외합니다.
  - b) MCPS Regulation EEB-RA, *MCPS 버스 운행 및 관리(Operation and Care of MCPS Buses)*에 따라, 모든 CDL 소지자는 차량 운행 빈도와 관계없이 무작위 검사, 합리적 의심에 의한 검사, 사고 후 알코올 및 약물 검사에 관한 연방 및 주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Maryland 주법에 따라 버스 운전자는 근무 중 합법적인 통제 물질(약물) 사용이 금지됩니다. (규정 EEB-RA에 명시된 특정 예외 상황 제외)
2. 무작위 또는 합리적 의심에 의한 알코올/약물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온 경우, 직원은 DCI를 통해 EAP 서비스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연계됩니다. 직원은 EAP와 DCI 직원이 치료와 관련해 소통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 동의서(Release of Information) 작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G. 프로그램 평가

1. EAP는 제공된 모든 워크숍과 전문 학습 과정을 평가하고, 모든 내담자에게 서비스 만족도 및 업무 성과에 미친 영향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내담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2. EAP 직원은 프로그램 성과를 평가하고 측정하는 데 필요한 이용률, 내담자 인적 구성 및 기타 정보를 기록하고 추적합니다.

**규정 변경사:** 2007년 12월 20일 새 규정 제정, 2011년 11월 21일 개정, 2025년 10월 13일 개정.

# MCPS 차별금지 성명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MCPS)는 인종, 민족, 피부색, 혈통, 출신국, 국적, 종교, 이민상태, 성, 성별, 성 정체성, 성 표현, 성 지향, 가족 형태/부모 상태, 결혼 상태, 나이, 능력 상태(인지, 사회/정서, 신체), 빈곤, 사회경제적 상태, 언어 또는 합법적이고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성향 또는 소속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차별은 모두를 위한 평등, 포용, 수용을 만들고 육성하고 촉진하려는 우리 공동체의 오랜 노력을 약화시킵니다. 교육위원회는 혐오를 조장하고 학교 또는 교육구 운영 또는 활동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언어의 사용 및/또는 이미지와 기호, 상징의 표시를 금지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교육위원회 정책 ACA, 차별금지, 평등 및 공평과 문화적 능력(Nondiscrimination, Equity, and Cultural Proficiency)을 볼시다. 이 정책은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중요하며 특히, 개인의 실제 또는 여겨지는 인적 특성으로 교육적 결과를 예측해서는 안 된다는 교육위원회의 신념을 단호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또한, 공평성이 암묵적 편향, 부당한 이질적 영향을 미치는 관행, 정당화되지 않은 다른 관행, 교육과 고용의 기회의 평등을 방해하는 구조적, 제도적 장벽을 식별하고 해결하기 위한 사전 조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MCPS는 또한, 보이스카우트/걸스카우트와 다른 지정된 청소년 그룹에 동등한 접근권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모든 공공 및 공공 자금 지원 학교와 학교 프로그램이 이를 준수하여 운영하는 Maryland주 정책입니다.

- (1) 1964년 연방민권법 제6호>Title VI of the federal Civil Rights Act of 1964;
- (2) Title 26, Subtitle 7 of the Education Article of the Maryland Code에는 공공 및 공공 자금을 지원받는 학교와 프로그램은 다음을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a) 인종, 민족성, 피부색, 종교, 성별, 나이, 출신국, 혼인상태, 성적지향, 성정체성 또는 장애에 근거한 재학생, 예비학생 또는 재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 대한 차별.
  - (b) 개인의 인종, 민족성, 피부색, 종교, 성, 연령, 출신국, 결혼상태, 성 지향, 성 정체성 또는 장애로 예비 학생의 등록 거부, 재학생의 퇴학, 재학생, 예비 학생 또는 재학생 또는 예비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의 특권 박탈; 또는
  - (c) 불만의 결과에 관계없이 프로그램 또는 학교가 학생을 차별했다고 주장하며 불만을 제기하는 학생 또는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를 징계, 처벌을 발동하거나 기타 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

연락처와 연방, 주, 지역 법에 있는 요건은 이 서류와 갱신판 사이에 변경될 수 있으며, 이 서류의 내용과 참조를 대체하게 됩니다. 갱신된 최신 정보는 다음 온라인판을 참조합시다. [www.montgomeryschoolsmd.org/info/nondiscrimination](http://www.montgomeryschoolsmd.org/info/nondiscrimination).

MCPS 학생에 대한 차별에 관한 질문 또는 불만사항***	MCPS 교직원*에 대한 차별에 관한 질문 또는 불만사항***
Director of Student Conduct and Appeals Division of Equity and Organizational Development 850 Hungerford Drive, Suite 200, Rockville, MD 20850 240-740-3215   SWC@mcpssmd.org	Human Resource Compliance Officer Division of Human Resources and Talent Management Department of Compliance and Investigations 15 West Gude Drive, Suite B400, Rockville, MD 20850 240-740-2888   DCI@mcpssmd.org
1973년 504 장애법(Section 504 of 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에 따라 조정을 요청한 학생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에 따라 조정을 요청한 학생
Section 504 Coordinator Division of Specialized Support Services, Department of School Counseling 850 Hungerford Drive, Room 170, Rockville, MD 20850 240-987-8031   504@mcpssmd.org	ADA Compliance Coordinator Division of Human Resources and Talent Management Department of Compliance and Investigations 15 West Gude Drive, Suite B400, Rockville, MD 20850 240-740-2888   DCI@mcpssmd.org
학생 또는 교직원***에의 성희롱 등, Title IX에 해당하는 성차별에 관한 조사나 불평사항	
Title IX Coordinator Division of Equity and Organizational Development, Department of Student Conduct and Appeals 850 Hungerford Drive, Suite 200, Rockville, MD 20850 240-740-3215   TitleIX@mcpssmd.org	

\*본 통지는 개정된 연방 초등 및 중고등 교육법을 준수합니다.

\*\*본 통지는 Code of Maryland Regulations Section 13A.01.07.을 준수합니다.

\*\*\*차별에 관련된 민원은 다음과 같이 다른 기관에 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 Baltimore Field Office, GH Fallon Federal Building, 31 Hopkins Plaza, Suite 1432, Baltimore, MD 21201, 1-800-669-4000, 1-800-669-6820 (TTY); Maryland Commission on Civil Rights (MCCR), William Donald Schaefer Tower, 6 Saint Paul Street, Suite 900, Baltimore, MD 21202, 410-767-8600, 1-800-637-6247, [mccr@maryland.gov](mailto:mccr@maryland.gov); Agency Equity Officer, Office of Equity Assurance and Compliance, Office of the Deputy State Superintendent of Operations, Maryland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 200 West Baltimore Street, Baltimore, MD 21201-2595, [oeac.msde@maryland.gov](mailto:oeac.msde@maryland.gov); 또는 U.S. 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for Civil Rights (OCR), 61 Forsyth St. S.W., Suite 19T10, Atlanta, GA 30303, 404-974-9406 and TDD: 800-877-8339, [OCR.Atlanta@ed.gov](mailto:OCR.Atlanta@ed.gov), 1-800-421-3481, 1-800-877-8339 (TDD), [OCR@ed.gov](mailto:OCR@ed.gov), 또는 [www2.ed.gov/about/offices/list/ocr/complaintintro.html](http://www2.ed.gov/about/offices/list/ocr/complaintintro.html).

안내서는 영어 이외의 언어와 미국 장애인 복지법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에 따른 대체 형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MCPS Office of Communications, 전화번호 240-740-2837, 1-800-735-2258 (Maryland Relay) 또는, [PIO@mcpssmd.org](mailto:PIO@mcpssmd.org)로 연락하여 요청합시다. 수화통역 및 기타 특수 보조 등의 제반 시설이 필요한 경우는 MCPS의 Office of Interpreting Services, 240-740-1800, 301-637-2958 (VP) 또는 [mcpsinterpretingservices@mcpssmd.org](mailto:mcpsinterpretingservices@mcpssmd.org) 또는 [MCPSInterpretingServices@mcpssmd.org](mailto:MCPSInterpretingServices@mcpssmd.org)로 연락합시다.